

안양시 상수도 급수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

제정 1973. 7. 1 훈령 제 8호
전면개정 1994. 5. 19 훈령 제237호
일부개정 2020. 1. 31 훈령 제706호(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일괄
정비 규정, 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양시수도급수조례 및 동규칙에 의한 안양시 상수도공
용급수장치의 급수관리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정 2020. 1. 31>

제2조(급수관리인의 승인) 안양시 상수도공용급수장치의 급수관리인(이하 “급
수관리인”이라 한다)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
의한 지정신청과 재정보증인을 설정하여 시장의 지정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개정 2020. 1. 31>

제3조(급수관리인의 주의무) 급수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
제외하고는 24시간 계속급수를 하여야 한다.

1. 급수장치 청소 및 보수로 일시 중단될 때
2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제4조(요금의 납부의무) 급수관리인은 매월 1회 수도요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여
야 한다.

제5조(요금의 검침 및 징수방법) 급수관리인은 수도전에 대한 검침을 월 1회
실시하되 통합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

제6조(관리인의 해제 및 손해배상) 시장은 급수관리인이 다음 각 호에 위반하
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리인 지정을 해제하거나 당사자 또는 재정보증인에
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내에 급수를 거절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
2. 수도요금을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
3. 급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하였
을 때
4. 기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

안양시 상수도 급수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

제7조(세칙) 공용급수 수도전의 급수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칙 <94. 5. 19 훈령 제237호 전면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. 31 훈령 제706호, 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
쓰기와 약칭 일괄정비 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안양시상수도관리인지정신청서

안양시상수도급수조례 제7조와 급수관리인지정 규정을 준수하여 공용급수 상수도 관리인 지정을 받고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1. 지정을 받고자 하는 위치
2. 공용급수 수도전 번호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:

성명: (인)

보증인 주소:

성명: (인)

안 양 시 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재 정 보 증 서

주 소:

성 명:

생년월일: 년 월 일

안양시 상수도 공용급수 급수전 관리인으로 지정받은 기간중에 급수요금의 체납관리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등이 연대 변상하겠음을 서약합니다.

 년 월 일

신청인 주소:

 성명: (인)

보증인 주소:

 성명: (인)

안 양 시 장 귀하